

#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

의안 번호	75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9. 4. 8.

발 의 자 : 김명환 의원  
외 8인

## 1. 제 안 이 유

-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 ('98. 10. 12)되어 상임위원회명칭 및 직무와 소관 사항이 변경 되었으나
- 본 규정 조문중 안산시의회위원회 조례 개정 이전의 상임위원회명칭 조문이 있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코자함.

## 2. 주 요 골 자

- 의회 공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중 "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·간사"를 "의회·행정위원회 위원장·간사"로 개정(안 제11조)

## 3. 참 고 사 항

- 관련법규
  -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(제2조 및 제3조)

##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

안산시의회포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(의회 공적심사위원회) 제2항중 “의회운영위원회”를 “의회 · 행정위원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 (의회 공적심사위원회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위원회는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<u>의회운영위원회</u> 위원장·간사, 사무국장, 전문위원으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	<p>제11조 (의회 공적심사위원회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 .....<u>의회·행정위원회</u>..... .....</p>